

#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( 의안번호 제419호 )

## 심사보고서

1997. 6

총무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5. 13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7. 6. 16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7. 6. 16

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안이유

- 지방행정의 전산화 추세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주민서비스 향상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기능직렬 중 전기직 2명, 운전직 1명, 필기직 1명을 전산직으로 조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정원조정 (안 제2조)

- 본청 : 237명 → 239명
- 사업소 : 17명 → 15명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능직렬 중 전기직, 운전직, 필기직을 전산직으로 조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### 4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우리의 결원은
- 답 : 27명 정도
- 문 : 정원은 군에서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주는 것인지
- 답 : 정원 충원은 상부의 승인을 받음.

#### 5. 토론 : 없음.

#### 6. 심사결과

- 1997. 6. 1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